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수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117

발의연월일: 2025. 3. 19.

발 의 자:최수진・임이자・김소희

김예지 • 구자근 • 김선교

박준태 • 박충권 • 강승규

신성범 · 김위상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국회법」에서는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이를 견제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 탄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 그러나 국회 다수 야당이 지나치게 탄핵을 남발할 경우 정치적 악용, 행정 공백, 사법부 부담, 국정 마비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지만 이를 막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.

탄핵심판의 경우 길게는 수개월 이상 걸릴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국가 운영에 큰 위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등 해외에서와 같이 탄핵 심판이 끝나기 전까지 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보장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.

단 현행 헌법 제65조제3항에서 "탄핵소추의결 시 직무가 정지된다"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, 「국회법」과 「헌법재판소법」 개정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의 정당성을 일정 부분 심사한 후 직무 정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을 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직무 정지를 판단하도록 함(안 제50조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최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회법」(의안번호 제9116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헌법재판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"헌법재판소의"를 "헌법재판소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헌법재판소의"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0 일 이내에 당사자의 권한 행사 정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0조(권한 행사의 정지) 탄핵소	제50조(권한 행사의 정지) ①
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<u>헌법</u>	
<u>재판소의</u> 심판이 있을 때까지	헌법재판소가 그 필요성을 인
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.	정하는 경우 헌법재판소의
<u><신 설></u>	② 제1항의 경우 헌법재판소는
	탄핵심판 청구를 접수한 날부
	터 30일 이내에 당사자의 권한
	행사 정지 여부를 결정하여야
	<u>한다.</u>